

문서번호 영동군의회 2019 - 28

시행일자 2019. 8. 26.

수 신 영동군의회 의장

(경유)

## **제 목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**

---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동군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  
2. 발의자 명부 1부. 끝.

발의자 : 의원 남기학 (인) 외 7인



##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남기학 의원 외 7
발의년월일	2019. 8. 26.

#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8. 26.

발 의 자 : 남기학, 윤석진, 이수동, 정진규,  
김용래, 이승주, 이대호, 정은교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관광·외유성 논란과 일부 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.
-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되,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서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영동군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적용대상, 허가 및 제한(안 제1조~제3조)
- 연수계획서 제출, 심사위원회의 설치, 심사기준, 심사위원회의 회의, 수당 및 여비(안 제4조~제7조)
- 연수 및 출장 제한,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(안 제8조~제10조)
- 예산 편성 · 집행 및 사후관리(안 제11조~제12조)

첨 부 1.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  
2. 관계법령 1부. 끝.

영동군 조례 제 호

##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대상)** 영동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공무국외연수 등(이하 “공무국외연수 등”이라 한다)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 능력향상 도모, 외국의 해당 사례견학 ·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우수시책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해외연수
2. 외국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체결 · 교류행사와 관련되는 해당 외국방문
3.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거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참가
4. 영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요청에 따른 국외방문
5. 그 밖에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허가할 수 있는 국외활동

**제3조(허가 및 제한)** ① 공무국외연수 등은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. 이 경우 해당 연수계획서 등에 대하여 미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의 허가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

연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의회가 개회중일 경우. 다만,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2.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나 1명으로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관련 연수 등을 계획하는 경우
3. 이미 공무국외연수 등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일 경우. 다만, 제한횟수는 다음 공무국외연수 등에서 한 차례만 한정한다.

**제4조(연수계획서)** ① 공무국외연수 등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연수 등 계획서(이 조례에서 “연수계획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다른 기관 등 의 계획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연수계획서에는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명칭 또는 행사명
2. 목적 및 기간·일정
3. 대상국가(방문국가 및 경유국가를 포함한다) 및 기관
4.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
5. 필요한 경비(초청자 측의 부담이 있을 경우 전체경비에 대한 그 규모·용도 또는 비율을 기재한다)
6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

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당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**제5조(심사위원회)** ① 의장은 연수계획서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 심사위원회

(이) 조례에서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
2. 대상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
3.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
4. 제출되는 연수보고서의 처음 연수계획서와 일치성·효과성 및 해당 경비의 정산(부당 사용한 정산금액을 포함한다)
5.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(互選)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의회부의장이 주재한다.
2.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, 의장이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3. 제2호 외의 위원은 의장이 회의마다 해당 심사안건과 관계없는 의원으로 지명한다.
4.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5.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

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.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·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3.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해야 한다.
4.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의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5.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6조(심사)**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연수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연수계획서 또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한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세부적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②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연수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 의장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7조(연수보고서 등)** ① 공무국외연수 등을 마친 의원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연수 등 보고서(이 조례에서 “연수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의장은 이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연수보고서에는 공무국외연수 등을 실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 결과
2. 실제로 거둔 성과 또는 효과(사진,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)

3. 사용한 경비 및 정산내역
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

③ 의원은 공무국외연수 등을 마친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나 소관 또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
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연수보고서에 대해 서도 군민에게 공개한다.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르되, “연수계획서”는 “연수보고서”로 본다.

**제8조(경비책정·사용 등)** ① 공무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며, 해당 경비는 「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」과 지급 범위에서 책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, 국제회의,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경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다.

②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군수에게 편성을 요청해야 한다.

③ 의원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등에 참가할 경우 해당 경비는 군수가 지급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 공무국외연수 등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된 경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산금액 등을 확정한다.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은 해당 반납 금액을 여입(餘入) 조치한다.

⑤ 공무국외연수 등의 경비책정·사용, 국외여비의 정산·여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영동군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

**제9조(결과활용)** ① 의장은 의원이 공무국외연수 등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된 의정발전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② 의장은 연수보고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보고서를 참고사항으로 보낼 수 있다.

**제10조(의회규칙 등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 또는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하여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다른 규칙의 폐지)**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은 폐지한다.

[별표]

공무국외연수 등 심사기준(제6조제2항 관련)

항목	심사기준	예	아니오
연수의 필요성	1. 공무국외연수 등 외의 수단으로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?		
	2. 이전에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?		
	3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?		
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	1. 연수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?		
	2.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연수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?		
	3.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?		
	4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?		
	5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?		
	6.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의 경우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?		
연수자의 적합성	1. 연수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연수자 선정이 적합한가?		
	2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이 연수에 포함되었는가?		
	3. 연수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연수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?		
연수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	1. 연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?		
	2. 방문국의 관습, 공휴일 등을 감안,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?		
	3. 국내외 등 연수를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?		
연수경비의 적정성	1. 공무국외연수 등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?		
	2.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수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		
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	1. 방문 및 주변국가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?		
	2.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?		

[별지 제1호서식]

## 공무국외연수 등 계획서

### 1. 연수개요

연수목적						
연수동기 및 내용						
연수기간	. . . ~ . . . (일간)					
연수국						
연수자	소속	직급	성명	성별	연령	연수경비
	금액	부담기관				
	계		명			천원

## 2. 연수일정
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기관	업무내용	접촉예정인물 (직책포함)

### ○ 연수자 개인별 업무내용

연번	소속	직급	성명	업무내용

\*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

### 3. 연수경비

성명	계	체재비			항공운임	준비금	기타
		일비	식비	숙박비			
계							

### 4. 연수효과

[별지 제2호서식]

## 공무국외연수 등 보고서 작성요령

### 1. 보고서 규격 및 분량

- 보고서의 규격은 A4(210mm × 297mm)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절을 원칙으로 하고,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

### 2. 보고서 구성형식

-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

#### <목차 구성 예시>

- I. (서론부분) : 연수의 배경 및 연수세부내용 등
- II. (본론부분) :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· 분석내용 등
- III. (결론부분) :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
- IV.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: 저자 · 서명 · 출판사 · 출판년도 ·

총면수

- 보고서의 맨 첫 장(겉표지)에는 제목 · 제출연월 · 소속의회를, 둘째 장(속표지)에는 연수국 · 연수목적 · 연수기간 · 보고서 작성자 및 연수자 인적사항을,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

### (1) 걸표지 예시

### (2) 속표지 예시

#### <보고서>

##### ○○ 제도관련 공무국외연수보고서

(제 목)

○○년도 ○월  
(월까지만 표시)

○○의회

#### 공무국외연수 개요

1. 여행국 :
2. 연수목적 :
3. 연수기간 :
4. 보고서 작성자 : 소속위원회, 성명
5. 연수자 인적사항(2명 이상의 경우)

소속위원회	성명	비고

### 3. 첨부자료

#### ○ 연수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- 항공권 및 열차·버스 승차권,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
-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·회의 장면 사진 등

### 4. 작성 참고사항

- 보고서는 최신 정보·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, 보고내용의 활용방안, 유사목적으로 연수하게 될 연수자를 위한 조언, 그 밖의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,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·법령·문헌 등 구체적 근거를 명시
-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연수자가 단체로 연수한 때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

## 관 계 법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 발의자 명부

직 책	성 명	서명또는날인	비 고
의 원	남기학		
의 원	윤석진		
의 원	이수동		
의 원	정진규		
의 원	김용래		
의 원	이승주		
의 원	이대호		
의 원	정은교		